

初歩者教室

工業所有權 制度의 基本 常識(1)

編輯室

工業所有權의 意義

工業所有權이라고 함은 一般的으로 “特許”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特許權·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商標權을 包含시켜 總稱하는 말로서 使用되고 있으며, 그 語源은 프랑스語인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서 이것이 英語의 *Industrial Property*로 바뀌어 日本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동안 그 本來의 뜻인 産業所有權이 아닌 工業所有權이라는 名稱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工業所有權制度는 工業分野에만 關聯되는 制度나 權利가 아니고 其他의 商業·農林業·水産業 및 鑛業等 全産業分野에 關聯되는 것으로서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爲한 *Paris*協約(소위 파리條約)” 第1條(總則) 第3項에는 “工業所有權은 最廣義로 解釋되며 本來의 工業 및 商業뿐 아니라 農産業 및 採取産業, 例컨대 포도주·穀物·葉煙草·果實·畜類·鑛物·鑛泉·麥酒·花草 및 穀粉等 一切의 製造品 또는 天然産物에도 適用된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工業所有權이라고 하기보다는 産業所有權이라고 하는 것이 더 適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人間이 영위하는 社會生活의 모든 面に 걸쳐서 工業所有權이 關聯되지 않은 部分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工業所有權은 著作權과 함께 人間의 精神的 勞作의 結晶體인 創作에 對하여 國家가 公權力에 依해 부여해주는 獨占權으로서 通常의 動産이나 不動産과 달리 그 形態가 없으므로 해서 無體財産權이라 불리우며, 無體財産權中에서도 國家産業發展에 直接 寄與하는 産業의 無體財産權인바, 앞에서 말한 著作權과 함께 知的 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러한 理由로 著作權까지도 特許廳에서 管掌하는 國家도 있다.

工業所有權은 다른 어떠한 分野보다도 國際性이 강한 制度로서 다른 制度에 비해 國家間에 制度上의 差異點이 적은 反面 各國의 國益에 따라 制度上의 差異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다. 工業所有權은 出願과 登錄에 의해 多數國家에서 保護를 받을 수 있고, 큰 國家의 利益을 가져오는 技術輸出에 있어서 그것이 工業所有權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單純한 用役輸出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現在 우리나라는 技術導入을 위해 해마다 莫大한 外貨를 支拂하고 있는 實情인데 그처럼 技術導入의 對價로서 支拂하는 소위 로열티(*Royalty*)라는 것은 바꾸어 말해서 特許權 또는 商標權의 使用料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더라도 工業所有權의 重要性을 알 수 있으며, 美國이 自國民 商標의 保護와 物質特許制度의 採擇等を 民間레벨이 아닌 政府次元에서 強力히 要求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工業所有權制度는 앞으로 國內뿐 아니라 國際的인 次元에서 그 重要性이 增大될 것임을 쉽게 豫測할 수 있으므로 우리 國民 모두가 工業所有權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工業所有權에 관한 知識을 넓혀서 이를 活用하도록 하는 것이 時急한 課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일찍부터 關心을 가졌던 國家일수록 技術과 産業이 發達하였고, 反對로 産業이 發達할수록 工業所有權이 重要視되고 있느니만큼, 先進産業社會를 指向하는 지금 우리들 各自가 工業所有權制度의 올바른 理解와 活

用에 힘쓰고 또한 他人의 工業所有權을 尊重하고 保護하는 것은 國家産業發達の 礎石을 쌓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技術과 商品의 對外競爭力을 實質적으로 向上시키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工業所有權의 保護趣旨

工業所有權은 一定한 技術的 創作을 한 자가 그 技術內容을 國家·社會에 公開, 提供하는 對價로 國家는 이들 創作者에게 그 創作技術을 一定期間 獨占적으로 使用, 收益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 주는데 이렇게 부여된 權利가 곧 工業所有權이다. 즉 産業에 利用할 수 있는 새로운 技術的 創作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精神的, 肉體의 努力과 經費 및 時間이 所要되는데, 이러한 創作技術을 아무런 對價의 提供없이 公開하여야 한다면 새로운 技術開發에 時間과 努力을 消費하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自己의 創作技術을 社會에 公開하여 關聯產權界의 技術의 進歩와 向上, 그리고 國家産業發達에 寄與한 사람을 積極적으로 保護함으로써 技術開發 및 公開를 促進시킬 必要가 있다. 이러한 必要에 따라 國家는 創作者와 國民들이 함께 利益을 받을 수 있도록 創作者에게는 自己의 開發技術을 一定期間 獨占적으로 使用, 收益하여 技術開發에 所要된 費用과 努力을 그 以上으로 回收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여 주고, 一般國民은 工業所有權의 許與를 前後하여 公開된 創作技術을 스스로의 技術開發에 利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一定한 期間이 지난 後에는 그 創作技術을 누구나 아무런 對價의 支拂없이 自由롭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創作者와 一般國民을 함께 保護한다는 것이 工業所有權制度의 趣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商標權은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과는 달리 創作에 의해 權利를 取得하는 것이 아니고 一定한 商標使用者에게 그 使用狀態를 權利로서 認定하고 獨占使用하도록 하여 他人의 模倣과 盜用등을 排除하여 줌으로써 그 商標使用者가 商標를 매개로 構築하는 市場의 地位,

즉 信用을 보호해주어 業務上의 信用이 維持增進되고 市場秩序가 確立되도록 하는 制度로서, 이처럼 商標의 獨占的 使用을 權利로서 보호함으로써 商標使用者는 自己信用의 維持를 爲해 自己商品의 品質을 維持, 保證해 주게 되며 그에 따라 一般需要者는 安心하고 商品을 購買할 수 있는 利益이 있고 不正競爭의 素地를 없애 주어 商品의 流通秩序를 安定시켜 주고 따라서 間接적으로는 좋은 品質의 商品을 만들 수 있도록 技術開發을 促進시키도록 하는데에 商標權保護의 趣旨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工業所有權은 궁극적으로는 國家産業發達이라는 公益을 追求하는 制度이기 때문에 創作者가 創作技術을 社會와 一般國民에게 公開함으로써 一般人이 받는 利益 즉 公益과, 公開의 對價로 創作者에게 許與하는 獨占排他的인 權利인 工業所有權이 서로 均衡을 이루도록 배려한다는 데에 工業所有權制度의 妙味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工業所有權制度는 特許權者·商標權者 등의 個人的인 權利를 保護하여 주는 한편 社會全體의 公益도 함께 保護하여 주는 것이므로 모든 創作技術이나 商標를 保護하는 것은 아니고 公益을 害하거나 特定人에게 獨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認定되는 것은 工業所有權을 許與하지 않거나 그 權利를 國家가 收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工業所有權이 주어지더라도 그 效力이 미치지 않는 範圍를 法으로 規定하여 줌으로써 公益과 私益의 調和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의 對象인 創作이라도 營利的인 目的이 아닌 家事用으로 使用하면 特許權의 權利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든가, 他人의 登錄商標라고 하더라도 自己의 姓名이나 商號에 使用하면 不正競爭의 目的이 없는 限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등이 그것이다. <계속>

發明은 富의 源泉

國力의 바탕 !